

# 공 보

**제611호 2017. 9. 20.(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13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7-114호 단지봉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5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016호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거창군 공고 제2017-1021호 2017년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 모집 공고 ..... 37  
 거창군 공고 제2017-1024호 전기발전(태양광)사업 양도 양수 인가 공고 ..... 45  
 거창군 공고 제2017-1026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열람 공고(소로3-164) ..... 47  
 거창군 공고 제2017-102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 51  
 거창군 공고 제2017-1030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2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7-10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59

이 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2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2 외 5건(부여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36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176-48	2009-12-28	2017-09-20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89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517-378	2009-12-28	2017-09-20	주상면의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147-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134	2009-04-01	2017-09-20	금원산으로 가는 도로라하여 붙여진 이름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2	2009-04-01	2017-09-20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6-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57	2016-04-20	2017-09-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6-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7길 59	2016-04-20	2017-09-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4년 착수 단지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19일  
거창군수

1. 사 업 명: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단지봉마을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단지봉마을권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사 업 구 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용암리, 박암리 일원
4. 소재지 규모: 법정리 3개, 행정리 8개, 자연마을 16개
5. 면 적: 3,835ha (농경지 405ha, 임야 3,233ha, 기타 197ha)
6. 가구 / 인구: 310호(농가 247호, 비농가 63호), 인구 564명
7. 사 업 비: 4,400백만원(국비 3,080, 도비 396, 군비 924)  
자부담 136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 후 정산)
8. 사업의 효과: 단지봉권역의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9. 사 업 기 간: 2014년 ~ 2018년(5년간)
10. 시 행 자: 거창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권역 행복복지센터의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전 소득법인의 기금납입 협약 이행.

## 12. 주요사업개요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행복복지센터, 행복마을회관, 행복마을안길정비 등

나. 지역소득증대사업 : 농산물가공 및 선별장

다. 지역경관개선사업 : 행복쉼터, 마을지붕정비, 마을경관정비, 행복담은  
편지함, 권역안내판 등

라.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  
개발담당(☎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3. 주요내용

####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

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

(구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 제12조)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4. 입법예고기간: 2017. 9. 15. ~ 2017. 10. 7. (22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재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219], 전화[940-3242] 또는 E-mail[jhkim0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 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재무과장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구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 제12조)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5 ~ 10. 7. <22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중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도내 개정현황

완료(5):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합천

(7) 법제처 컨설팅사례 반영

#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공사나 용역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사의 종류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 내용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률: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노무비 전용 통장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b>제1조(근거)</b> 이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b>제2조(정의)</b>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 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별지 제2호서식]

## 임금 지급 및 청구 명세서 건설기계 임대료

○ 공사명:

계약상대자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1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2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 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의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첨부)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감리원			(인)	

거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급공사”란 군(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li> <li>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li> <li>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li> </ol>	<p>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u>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관급공사</u>”란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u>공사 및 용역</u>을 말한다.</li> <li>2. “<u>근로자</u>”란 「<u>근로기준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li> <li>4. “<u>도급</u>”이란 「<u>건설산업기본법</u>」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li> <li>5. “<u>하도급</u>”이란 「<u>건설산업기본법</u>」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li> <li>6. “<u>임금</u>”이란 「<u>근로기준법</u>」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li> </ol>	<p>이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함</p> <p>용어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p> <p>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p> <p>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p> <p>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p>	<p>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u>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u>를 말한다.</p> <p>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u>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u>를 말한다.</p> <p>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u>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u>를 말한다.</p> <p>10. “수급인”이란 <u>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 받은 자</u>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p> <p>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u>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u>를 말한다.</p> <p>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u>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u>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li> <li>2.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li> <li>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li> <li>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체불 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lt;삭 제&gt;</p>	<p>입안기준에 맞게 조 제목 변경 문장 정비</p> <p>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담사항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p> <p>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p>	<p>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u>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u>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u></p> <p>&lt;삭 제&gt;</p>	<p>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담사항 삭제</p> <p>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담사항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li> <li>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li> <li>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u>대금지급 확인시스템</u>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은 공사나 용역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u>대금지급 확인시스템</u>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li> <li>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u>군수가</u>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p>	<p>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8조(신고센터 설치등)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부서 : 재무과</li> <li>2. 신고대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li> <li>3. 운영시간 : 연중 365일</li> <li>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간(09:00-18:00) :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li> <li>나) 야간(18:00-09:00) : 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li> </ol> </li> <li>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li> <li>6. 관련 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li> </ol> <p>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p>	<p>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u>설치·운영</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신고센터의 설치·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u>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은 구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 할 수 있다</p> <p>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업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3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u>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점에서는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삭제</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여지 있어 삭제</p>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

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既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① 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

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017. 7. 26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절 총칙

####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2. 계약문서

#####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나. 계약문서의 종류

- 1) 품의서·계획서
-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 5) 물량내역서 (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 7)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 (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 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년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 모집 공고

거창군 관내 가로수 및 도로법면 제초작업, 잡목제거 등을 위한 2017년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업무내용
산림경관 관리단	10명 (남6 / 여4)	산림과 공원녹지 담당	• 가로수 뒤 도로사면 환경정비 (풀베기, 지장목 제거 등) • 주요 도로변 및 산림연접지 잡목제거 등

#### 2. 응시자격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육체적 근로능력을 가진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및 임업기계 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우선선발
- 세대원 수 고려 저소득층 우선선발

###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2017. 10월 ~ 2017. 12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1일 52,000원(기본급)
  - 2017년 최저임금 1일 51,760원(시간당 6,470원)
  - ※ 실제 근무일수에 한하여 주휴수당 지급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 후생복지: 4대 보험가입
- 근무부서: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거창군 전역)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7. 09. 25.(월) ~ 09. 27.(수)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  
용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  
을시 선발 배제(예비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마.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1부

## 5. 채용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9. 29.(금),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17. 10. 10.(화)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2.(목)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  
역

※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이하 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가능

## 6.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

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b>산림경관관리단</b>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등록기준지: )				전화:				
					HP: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신장	cm
								체중	kg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귀 군의 산림과 산림경관관리단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인 (인)  <b>거 창 군 수 귀하</b>									

<b>응 시 표</b>	성 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주민등록번호			-						
	2017년 월 일 <b>거 창 군 수</b>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응시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성 명: 정자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정자로 기재(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수집)
- 주 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
-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를 위하여 수집(기본증명서 참고)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부착
- 학 력: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가족사항: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사항 작성
- 자격면허 및 경력: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작성 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림경관관리단(거창군 산림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림경관관리단(거창군 산림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산림경관관리단(거창군 산림과)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산림경관관리단(거창군 산림과)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산림경관관리단(거창군 산림과)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17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 . . ( 세)	기간제근로자	산 립 과 (산림경관관리단)

2017. . . .

작성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 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9.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내역  
가. 신원1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5 -50호)	발전소명	신원1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 발전소	사단법인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곽준섭	엄홍주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0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5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46(건물 지붕위)	
	설비용량	90kW	
	허가일자	2015. 12. 02.	
	사업개시일	2016. 04. 22.	
	양수(인)가일	2017. 09. 19.	

나. 신원2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5 -51호)	발전소명	신원2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 발전소	사단법인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박문규	엄홍주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0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5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64(토지 위)	
	설비용량	90kW	
	허가일자	2015. 12. 02.	
	사업개시일	2016. 04. 22.	
	양수(인)개일	2017. 09. 19.	

다. 신원3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5 -52호)	발전소명	신원3복지 영농조합법인 태양광 발전소	사단법인 신원면 생활체육협의회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운용	엄홍주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70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5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603(토지 위)	
	설비용량	90kW	
	허가일자	2015. 12. 02.	
	사업개시일	2016. 04. 22.	
	양수(인)개일	2017. 09. 19.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호선) 결정(변경) 열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2-25(2002. 6. 25.)호로 결정된 「군계획도로 (소로3-95호선)」에 대한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19.

## 거      창      군      수

###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4	6.0	국지 도로	480	거창 동변 514-3	소로3-167	일반 도로	거고 제25호 (2002.06.25)	
변경	소로	3	164	6.0	국지 도로	483	거창 동변 514-3	소로3-167	일반 도로	거고 제25호 (2002.06.25)	선형 변경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노 선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64호선	○ 선형변경 - 당초 : L=480.0m B=6.0m - 변경 : L=483.0m B=6.0m	○ 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연 내 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지장물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선형을 유지하고자 군계획 시설(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거창군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70-870/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교통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1) 동변지구(변경)

#### 가)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동변지구	주거	거창읍 동변리 72-1 일원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100,000	거고25호 (02. 6.10)	

#### 나) 용도구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0,000	-	100,000	100.0	
주거용지	89,180	-	89,180	89.2	
녹지용지	10,820	-	10,820	10.8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4	6	국지 도로	480	소2-238	소3-166	일반 도로	-	거고25호 ('02.6.10)	
변경	소로	3	164	6	국지 도로	483	거창동변5 14-3	소3-16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65	6	국지 도로	64	거창동변 187-3	소3-164	일반 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64	소로3-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선형 변경</li> <li>-폭원:6m</li> <li>연장:480m→483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제설 등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도로 선형을 유지하고자 기본설계를 반영한 균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li> </ul>

② 편의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동회관	동변리 187-1 일원	533	-	533	주거용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지정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최고	최저	
주거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거창군계획조례 별표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60	150	4	-	
녹지용지	•거창군계획조례 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40	100	4	-	
편의시설	공동회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집회장 및 부속건물	60	150	4	-
공공시설	도로	-	-	-	-	

[별지 제1호서식]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7 - 1028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9월 19일

###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전) 조성
2. 사업지구명 : 마리 대동지구
3.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산139-1(임)
4. 사업시행면적 : 1,941m<sup>2</sup>

토지의 표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마리	대동	산139-1	임	3,329m <sup>2</sup>	1,941m <sup>2</sup>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33,370천원(부지조성 29,370천원, 작물시설 등 4,00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허가)일부터 12개월
8.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56 김종화
9. 이의신청기간 : 2017. 9. 19. ~ 2017. 10. 20.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 이내
- 문화예술관람권: 2매 이내

###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 055-940-3035, fax 940-30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940-303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 1. 제안 이유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나.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문화예술관람권: 2매이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2): 의령, 함양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세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중복될 경우는 제6호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지도사의 배치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을 확대함(안 제5조, 별표)

(현행)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추가) 매주 월요일

나.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지도사 휴무일 신설함(제5조의2)  
○ 매주 월요일

다. 법령 재기재 또는 법령 위배소지 규정 삭제함(안 제8조제3항, 제9조)  
○ 공유재산 위탁기간: 5년 이내임에도 4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  
○ 보험가입: 법령 재기재로 삭제

#### 4. 개정규칙안: 붙임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입법예고 기간: 2017. 9. 18. ~ 2017. 10. 10.(22일간)

####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평생교육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우) 501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 담당부서: 거창군청 평생교육센터

【☎ 055-940-8703, fax 940-8709】

○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평생교육센터 청소년담당 ☎ 940-87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칙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거창월성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p> <p>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에 휴관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p> <p>&lt;삭 제&gt;</p> <p>② -----제1항----- ----- ----- -----</p>	<p>휴무일을 현실화하여 별표로 보기 쉽게 정리</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p>	<p>청소년지도사 휴무일 신설</p>
<p>제8조(위탁운영)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갱신 할 수 있다.</p>	<p>제8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위배(위탁기간 5년이내)</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자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르면 되는 사항으로 삭제</p>



[별표]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

시 설 명	휴 관 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매 주 월요일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 1월 1일, 설·추석연휴	

## 관련법령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

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